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4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순번	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1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	2204500	정부	2024.10.2.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5. 2. 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
2		2207002	김동아의원	2024.12.27.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5. 2. 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

가. 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 4. 17.)에
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
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
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
4. 23.)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
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, 중소벤
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,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‘가짜 장애인기업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한편,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‘금원(金員)’을 ‘금품’으로 순화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‘금원(金員)’을 ‘금품’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14조제3항).
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8조의2제3항).

다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).

라.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).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금원(金員)”을 “금품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3항 중 “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”를 “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

다만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<u>금원(金員)</u> 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(損金)에 산입(算入)할 수 있다.	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금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의2(장애인기업의 확인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<u>제18조의3제1항제1호에</u> <u>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</u> <u>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</u> <u>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</u> <u>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</u> <u>을 할 수 없다.</u>	제18조의2(장애인기업의 확인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</u> <u>제2호의2에</u> <u>해당하여 장애인기</u> <u>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</u> <u>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</u> <u>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</u> <u>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</u> <u>에서</u>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 제18조의3(장애인기업의 확인 취	④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3(장애인기업의 확인 취

소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3. 4. (생략)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소) ① -----

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
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
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 다만, 제1항제3호의 경우에
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
있다.